

HD현대건설기계 녹색구매 GUIDE

구매부문

- 목 차 -

제1조 목적

제2조 적용대상

제3조 용어정의

제4조 각 당사자의 역할

제5조 녹색제품 구매

제6조 가격선호제

제7조 포상 및 우대 방침

별지1. 녹색제품의 기준

별지2. 구매절차

제 1 조 목적

HD현대건설기계 주식회사(이하 ‘회사’라 함)는 환경 친화적인 경영을 추구하기 위하여 녹색구매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, 청정 생산과 친환경 고품질 제품을 생산하여 국가정책에 부응함으로써 사회적 책임을 다 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적용대상

회사의 상품화를 목적으로 구매, 개발하는 모든 제품의 모든 구성(직접자재, 간접자재, 설비자재)에 적용된다.

제 3 조 용어정의

1. ‘녹색제품’이라 함은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과 비교하여 자원의 절약에 기여하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「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」 제2조제5호에 따른 물품내지 아래 각호의 제품을 말한다.

1-1. 「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」 제17조 제1항에 따라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에 비해 제품의 환경성을 개선하여 환경표지 인증받은 제품 및 동 기준에 적합한 제품

1-2. 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33조 및 「산업기술혁신 촉진법」 제 15조에 따라 재활용제품의 품질인증 대상품목으로 인증을 받은 제품

1-3. 「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」 제2조제5호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인 제품

1-4. 그 밖에 기타 구매부문장이 인정한 물품

① 재사용, 재활용, 재이용이 용이한 제품

② 에너지 소모가 적은 제품

③ 내구성이 큰 제품

④ 제품의 크기와 무게를 줄여서 자원소모를 줄인 제품

⑤ 기타 유해물질 미사용 제품 등

⑥ 이 밖에 유사한 물품

2. ‘녹색구매’라 함은 제1호에서 정한 물품을 구매하는 것을 말한다.

3. ‘가격선호제’라 함은 가격 평가시 녹색제품에 부여하는 우선구매 용인율을 의미한다.

(예: 10% 가격선호제에서 1,000원의 투찰가는 900원으로 평가되어 낙찰여부를 결정하며, 낙찰시 계약가는 1,000원으로 환원하여 구매)

4. ‘구매부문장’은 회사를 대표하여 구매업무를 하는 부문의 장을 말한다.

제 4 조 각 당사자의 역할

1. 회사 구매 부문

- 1-1. 녹색구매관련 기준설정, 구매절차 수립·관리, 녹색제품 구매 실적 관리

1-2. 물품구매시 품질, 가격 이외에 환경성 검토 및 녹색제품 우대

1-3. 녹색구매 관련 사내·외 교육 및 대내외 홍보

1-4. 연간 실적에 대한 보고 및 전사 공지

2. 협력회사

2-1. 물품 계약시 녹색제품 증빙자료 제시

2-2. 계약 후 납품 제품의 주요 환경정보 변경 시 회사에 고지

2-3. 회사 요청시 녹색제품 구매 현황의 통보

2-4. 그 밖에 녹색구매 필요한 사항

제 5 조 녹색제품 구매

1. 구매하고자 하는 제품의 품질, 가격 등을 비교하여 녹색제품 중 구매목적에 가장 적합한 제품을 구매 할 수 있다.

2. 녹색제품 구매 예외사항

- 구매하고자 하는 제품의 품목에 녹색제품이 없는 경우
- 녹색제품 대상 제품군에는 해당되나, 구매하고자 하는 녹색제품의 품목에 해당되는 제품이 없는 경우
- 녹색제품의 현저한 품질 저하 등의 이유로 구매가 어려운 경우

- 그 밖에 긴급한 수요의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로 녹색제품의 구매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
-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복구를 위해 긴급한 수요가 발생한 경우
- 그 밖에 사항으로 구매부문장이 정하는 경우

제 6 조 가격선호제

1. 회사는 녹색구매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가격선호제를 적용할 수 있다.
2. 가격선호제 용인율은 구매부문장이 녹색제품별 기준을 정할 수 있다.

제 7 조 포상 및 우대 방침

1. 본 지침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 우수한 성과를 인정받은 협력업체에 포상 및 지원을 할 수 있다.
2. 회사는 녹색구매 수범사례를 발굴, 성실히 이행한 부서나 개인을 포상할 수 있다.

별지 1. 녹색제품의 기준

1. 환경표지 인증기준

- 환경기준은 제조, 유통, 사용, 폐기 등 제품 전과정에서 환경성(유해물질 저감, 인체 안전, 절전, 절수, 재활용, 저소음 등) 고려
- 품질기준은 해당 제품별 한국산업규격(KS) 등을 만족하도록 규정

2. 저탄소제품 인증기준

- 제품의 전과정(원료 채취, 수송, 제조, 사용, 폐기 등)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감축량을 고려
- 환경성적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 중 「저탄소제품 기준」 고시의 '최대허용탄소배출량' 이하이거나 '최소탄소감축률' 이상인 제품

※ 최대허용탄소배출량 : 환경성적표지인증제품의 동종제품 평균 탄소배출량을 기초로 산정된 값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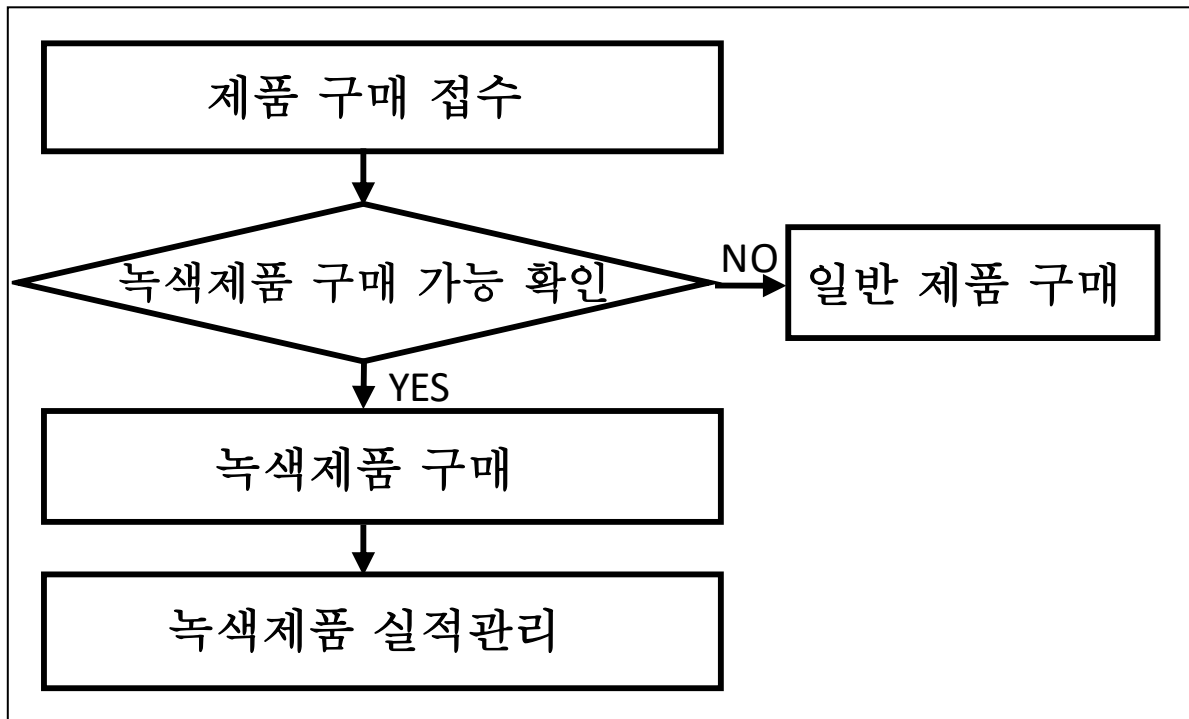
※ 최소탄소감축률 : 정부의 '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업종별 감축목표'에 기초한 3.3%

3. 우수재활용제품(GR) 인증기준

- 현장심사기준은 제품 전과정의 종합적 품질관리시스템뿐만 아니라 국내 폐자원 재활용률 및 재활용기술 등 제품의 우수성 검토
- 제품표준은 재활용 원료별·제품별 품질인증기준에 따라 품질 및 성능, 환경성 등을 검토

별지 2. 구매절차

- 녹색제품 구매 프로세스 -



1단계 : 녹색제품 대상품목 및 제품 확인

- 구매요청이 있는 경우 구매하려는 품목이 녹색제품 대상 품목인지 확인
- 녹색제품 대상품목이라면 실제 인증제품이 있는지 확인

2단계 : 녹색제품 구매가능 확인

- 녹색제품 예외사항 등을 검토하여 구매하고자 하는 제품을 구매 할 수 있는지 최종 확인

3단계 : 녹색제품 구매

- 녹색제품정보시스템, 상품정보시스템에 등재되어 있는 판매처 등을 참고하여 녹색제품 구매

4단계 : 녹색제품 구매 실적관리

- 녹색제품 구매 내역을 월별/연간 실적 취합 및 관리